

전자업계, 사적복제 보상금제도 도입 반대

1. 배경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물의 이용자를 위하여, 상업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이용 즉, 사적복제는 자유롭게 허용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저작권자측에서는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의 발달로 복제기술의 보급이 증대되고 성능도 비약적으로 발전되어 음에 따라 그동안 허용되어 온 사적복제도 어느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에서 처음으로 독일이 1965년에 사적복제에 대한 부과금제도를 도입했고, 이후 유럽 일부 국가들이 그와 유사한 제도를 채택, 시행하고 있으나 논란의 여지가 많아 영국 등은 제도 도입에 실패하고 미국, 일본 등은 오랜기간 이해 당사자간에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1989년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에서 동제

도 도입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제기된 바 있었고, 동위원회는 '90년 11월 동제도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 그후 출판문화협회로부터 동제도 도입을 건의한 바 있으며, '92년 6월에는 문화예술진흥원 등의 주관으로 동제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때 처음으로 이해당사자인 관련 업계 및 소비자가 참여해 동제도 도입의 반대 의사 표명으로 관련법 개정 추진이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금년 들어 문화체육부는 저작권 단체들의 요구로 또 동제도의 도입을 재 추진,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관련업계, 소비자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인 저작권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본회에서는 관련업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전경련,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경제단체 및 소비자단체들과 연대하여 문화체육부가 입법예고('92. 6. 22)한 저작권법 개정안 중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의 도입을 저지해 줄 것을 문화체육부 등 5개 정부관계기간에 강력히 건의하게 되었다.

2. 반대 사유

전자업계에서는 지금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가격인상으로 인한

국민 물가고 초래, 내수부진 심화, 수출경쟁력 약화, 기술개발지연, 기업의 체산성 악화, 하청 중소기업의 부도 속출, 실업률 증가 등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또한 최근 새 정부에 의해 형성된 각계각층의 고통분담에 의한 경제회생이란 신경계 의욕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는 측면에서 전 경제계와 소비자단체가 연대하여 동제도의 도입을 결사적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보아 전자업계에서는 아래의 사유를 들어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1) 사적복제 보상금제도의 도입은 현행 저작권법 규정과도 상충되는 것으로 법리성 불합리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권리를 따로 규정(제5절 제16조 내지 제21조)해 놓고 저작물 이용자를 위해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을 제한(제6절 제22조 내지 제35조)해놓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사적복제에 대해서는 저작권 제한규정 가운데 제27조로 이를 허용해 놓고, 또 이번에는 같은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중에 제27조 2를 신설해 사적복제로 인한 저작재산권자의 피해 보상권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 편집자 주

본고는 앞의 대정부 건의 내용중 논의배경과 반대사유로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임을 밝힌다.

앞의 제27조의 사적복제 허용이라는 규정과 뒤의 제27조의 2의 사적복제에 대한 피해보상권 부여규정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다.

즉 사적복제를 허용해 놓고 사적복제로 인해 저작재산권의 이익이 침해되었으니 그들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2) 사적복제 보상금제도의 보상금 징수대상의 법리적 모순과 징수방법의 무차별성

만일 사적복제 보상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가정해도 사적복제 보상금은 저작재산권자가 사적복제로 인한 피해 보상금이기 때문에 사적복제 행위자를 대상으로 그 보상을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제조업계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원천징수코자 하는 것은 모순인 것이다.

예컨대 누가 녹화기(VCR)나 녹음기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법으로 허용된 방송의 녹화나 저작료를 지불한 테이프만 구매해 들었을 경우 사적복제를 하지 않고서도 사적복제 보상을 내야 하는 제도상의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3) 사적복제 보상금제도는 2중, 3중의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불합리한 제도

사적복제 보상금의 대상품목은 녹음 및 녹화테이프와 녹음기, 녹화기, 복사기 등 5개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테이프를 판매할 때 사적복제 보상금을 지불토록 되어 있어 1차로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되고 그 공테이프가 프로덕션 업계로 가면 정식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한 뒤에 녹음이나 녹화를 하게 되어 있어 2차로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되는 결과이며 또 그것이 소비자에게 가면 녹화기나 녹음기를 이용하게 되어 있어 그 녹음기나 녹화기에 대한 사적복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적복제 행위를 하지 않고도 3차에 걸친 저작권료(보상금도 일종의 저작권료에 포함)를 지불해야 하는 모순이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녹음 및 녹화테이프 업계의 판매구조는 전체의 70% 이상이 이러한 프로덕션 업계로 판매되는 것이며, 나머지가 바로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어 대부분이 3차에 걸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형편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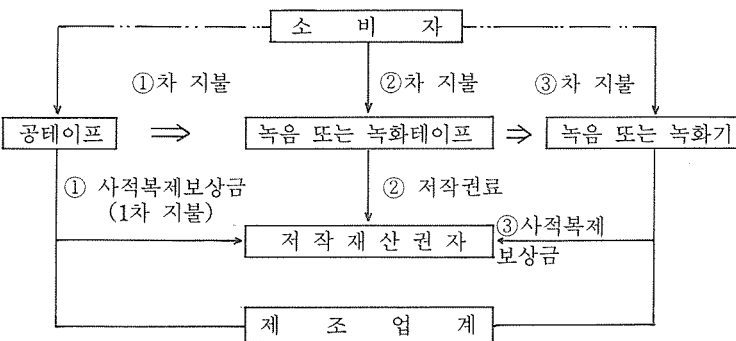
(4) 저작권자측, 사적복제 관련 실태조사 및 피해액 제시 등이 전무한 상태에서 동제도의 도입을 주장

동 제도 도입의 필요성 검토는 1차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적복제 행위가 어느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피해를 보고 있어 어느 정도의 보상이 필요한 것인가가 명확히 제시되고 또 그것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상을 요구해야 할 것인바, 그러한 구체적인 논거없이 동제도 도입만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이다.

기술적으로 볼 때 1가구에 녹화기 1대와 녹음기 1대만으로는 법으로 허용된 방송의 녹화나 녹음밖에 할 수 없어 사적복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1991년 부터는 프로덕션(녹화)업계에서 복제를 할 수 없는 장치를 도입, 사용하기 시작함으로써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적복제 그 자체를 거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다.

과연 현재 우리나라에서 1가구에 녹화기 2대 이상, 녹음기 2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 가정에서 복사기를 갖고 있는 가구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그것도 보유하고 있는 자체가 곧 사적복제를 하였다가 것이 아니며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 뿐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복제기를 대상으로 사적복제 보상을 저작권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면면들인 것이다.

(5) 동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



의 국가들은 복제기기를 수입에 의존하거나 이 제도 도입으로 복제기기 산업이 낙후되어 동 제도의 폐지를 관련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

현재 동제도를 도입, 시행중인 국가는 독일, 프랑스, 체코, 불가리아, 콩고 등 15개국으로 이 가운데 대부분의 국가는 복제기기 산업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독일, 스페인 등도 동산업이 크게 낙후되어 일본의 해외 투자기업에 의

해 생산, 공급중이나 미도입국가인 일본, 우리나라에 비해 크게 열세를 보여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독일에서 아직 세계적인 자기 테이프 업계로 존재하고 있는 BASF사는 '92년 7월에 사적복제 보상금제도 시행으로 동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고 동제도는 저작권자가 2중으로 저작권료를 받는 불합리한 제도임을 내세워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92

년 7월 7일자 일본전파신문 게재)

미국은 13년전인 1980년부터 저작권자측이 권리침해 입증을 여러 방법으로 노력했으나 그것은 입증되지 못했고 '84년에 녹화를 갖고 가정에서의 방송을 복제한 것은 합법적이란 판례가 나왔고, 최근에 와서 녹음기중 원음재생력이 뛰어난 디지털 녹음기에 대해서만은 동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나 소비자들의 반대로 아직 미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16년전인 1977년부터 이 해당사자인 저작재산권자측과 제조업계 그리고 소비자간에 논의가 계속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디지털 녹음기에 한해 검토해 본다는 원칙 아래 양측이 세부 방법론을 갖고 논의중으로 아직 미시행 상태이다.

영국은 사적복제가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주장하여 동제도 도입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그외에 우리의 경쟁 대상국인 대만,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 대다수 국가는 아직 동제도 도입자체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6) 우리나라 복제기기 산업의 최근 마이너스 성장과 전자업계의 채산성 악화 등 산업경제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

우리나라 복제기기 산업은 성장 측면에서 국제경쟁력 약화로 수출이 '92년에 4.8% 감소하고, 국내경기까지 침체되어 내수도 6.2%나 감소되는 등 '92년에는 전 품목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으며, 수익성 측면에서도 매출액 대

복제기기산업규모 비교

(단위: 백만불)

구 분	도 입 국				미 도 입 국			
	독 일		스 페 인		일 본		한 국	
	생산액	비 교 지 수	생산액	비 교 지 수	생산액	비 교 지 수	생산액	비 교 지 수
복 제 기 기	3,530	75	204	4	22,496	478	4,708	100
복 사 기	941	597	17	11	4,259	2,696	158	100
녹 화 기	994	14	112	2	11,785	171	6,885	100
카오디오	506	74	34	5	2,815	411	685	100
녹 음 기	23	3	7	1	1,311	149	880	100
테 이 프	1,066	97	34	3	2,326	211	1,100	100

주: 비교지수는 한국을 100으로 본 것임.

자료: World Electronic Data Book '93

독일 및 스페인의 일본투자기업

(단위: 공장수)

구 분	전자합계	녹 화 기	오 디 오	복 사 기	테 이 프
독 일	92	7	5	4	3
스 페 인	8	3	3	-	-

자료: 일본전자공업연감

가전산업의 수입의존을 비교

(단위: 백만불)

구 분	도 입 국		미 도 입 국	
	독 일	스 페 인	일 본	우리나라
국 내 시 장	8,010	2,526	16,407	2,287
수 입	7,198	1,828	1,644	165
수 입 의 존 율 (%)	90	72	10	7

자료: World Electronic Data Book '93

우리 복제기기 산업의 생산 수출동향

(단위 : 백만불)

구 분	생 산			수 출			내 수		
	'91	'92	증감율	'91	'92	증감율	'91	'92	증감율
복제기기산업	5,482	5,188	-5.4	3,764	3,585	-4.8	1,741	1,634	-6.2
녹 화 기	1,770	1,691	-4.6	1,286	1,181	-8.2	480	444	-7.5
녹 음 기	2,410	2,276	-5.6	1,550	1,564	0.9	856	801	-0.7
복 사 기	205	194	-5.4	18	25	38.8	167	163	-2.4
자기테이프	1,097	1,027	-6.4	910	815	-10.5	238	226	-5.1

주 : 복사기 수출은 복사기에 소요되는 부품의 수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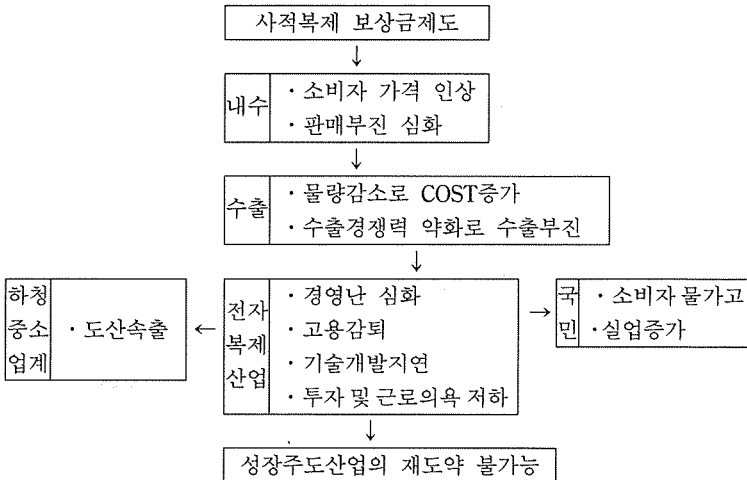
복제기기 등 전자업계의 경영수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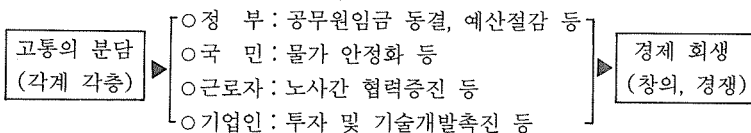
구 분		'89	'90	'91
매출액 대 순이익	제 조 업(평균)	1.59	1.41	1.38
	전 자 전 기 산 업	1.44	1.03	0.30
	전 자 통 신 산 업	1.22	1.14	0.24
	가 정 용 전 기 산 업	3.76	2.92	-3.85
	전 자 부 품 산 업	2.03	0.42	0.64
	전 기 기 계 산 업	1.42	0.55	1.23

자료 : 기업 경영분석 '92(한국은행)

사적복제 보상금제도가 전자산업에 미치는 파급 영향도



신경제 개념도



순이익율이 1.44%에서 1.03%에 이어 0.30%로 저하되어 카오디오 업계의 경우 지난 2년동안에 60여 개사가 도산되어 근로자들이 국내에서 일자리를 잃고 경쟁국인 홍콩 등지로 진출하는 등 가장 어려운 국면에 놓여있다.

이러한 경영여건하에서 동제도의 도입은 우리 산업계로서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것이며, 현재로서는 오히려 제조업 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복제기기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 자금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다.

(7) 현재 새정부의 국가 제1의 과제인 경제의 회생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동제도의 도입 추진은 신한국 창조의 새로운 의욕에 찬물을 붓는 결과

성장주도 산업이며, 기술혁신과 정보화사회를 선도해 나아갈 전략산업인 전자산업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동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고 그 경우 부진한 국내판매의 부진이 더 한층 심화될 것이며, 생산물량의 감소로 수출 경쟁력이 더 약화되고 채산성이 약화되어 기업의 경영난이 더 더욱 심화되어 하청 부품업계의 도산속출, 기업의 투자 및 근로의욕의 저하 등으로 성장을 주도해갈 전자산업의 재도약이 불가능해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성장주도 산업의 재도약이 불가능할 경우 고통분담에 의한 경제회생이라는 신경제 목표의 달성도 곤란할 것으로 보여진다.

(8) 사적복제 보상금제도는 기업에 있어 또 하나의 준조세 성격

현재 기업이 부담하는 조세 이외에 준조세 제도는 12종에 달하고 있다. 다행히 앞으로 정부는 준조세 제도를 축소, 폐지해 나간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전자업계가 부담하고 있는 주요 부과금제도

-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 환경오염방지사업 부담금
- 오염배출 부담금
- 폐기물 예치금
- CFC 기금
- 직업훈련 부담금
- 장애인 고용촉진 부담금
- 교통유발 부담금
- 개발 부담금
- 택지 소유 부담금
- 농지 전용 부담금
- 컨테이너 하역 부담금

저작재산권자측에서는 사적복제 보상금을 저작권 사용료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복제기기 제조업체가 저작권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만일에 저작권 사용대가의 일부라면 제조업체가 저작권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에도 이 경우 그렇지 않다. 또한 복제보상금을 일종의 권리 사용료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 권리의 사용빈도, 목적, 내용 등에 의해 그 요금이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도입코자 하는 사적복제 보상금은 그렇지 않아 결론적으로 이 제도는 기업에 있어 또 하나의 준조세 성격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볼 경우 기존의 준조세를 축소, 폐지해 나가고자 하는 원칙과 상충되

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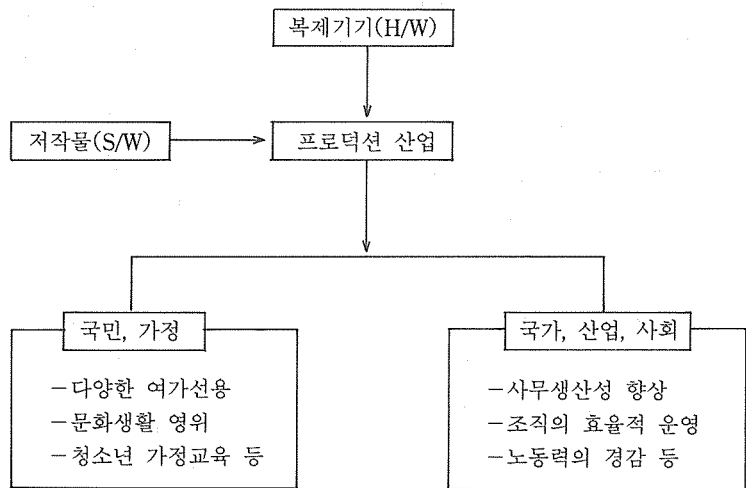
(9) 동제도의 도입은 저작재산권의 가치를 높여 주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문화예술진흥과 사회발전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

복제기기의 순기능은 복제기기(H/W)에다 저작물(S/W)을 첨가해 이용됨으로서 저작재산권의 가치를 제고시켜 줄 뿐 아니라 그 이용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여가선용, 효율적인 청소년교육, 문화생활의 영위 등을 통해 국민문

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 사무생산성의 향상, 노동력의 경감 등을 통해 산업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에 동제도 도입으로 복제기기의 보급이 저조하면 S/W산업인 저작물의 이용도 감소되어 저작권자의 가치가 저하되고, 그 이용도 부진해지면 결과적으로 국민문화예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산업사회 발전까지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복제기기의 순기능도



(10) 동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특히 학생이나 청소년층)로부터 저작물 이용의 제약이라는 측면과 국민물가고라는 측면에서 강력한 반발이 예상

가정에서 주로 학생이나 청소년층이 상업목적이 아닌 주로 교육 등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적으로 이용했을 경우 그들이 그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사적복제 보

상금제도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 제도를 저작물 이용에 있어 일종의 규제라고 보고 영국 등에서와 같이 그것은 저작물 이용에 관한 소비자들의 권한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제도 도입을 반대할 소지가 다분하다.

또 오늘날과 같이 전 국민들이 물가고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제조업체

는 현재의 경영 여건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그만큼 가격을 현실화할 수 밖에 없고 그 경우 국민물가를 더 한층 심화시키는 것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

(11) 저작권재산권은 일종의 사권인 관계로 이해 당사자간의 충분한 이해는 물론 국민적 이해가 절대 필요

일본의 경우 '76년부터 제도 도입주장이 있었으나 그 반대 주장이 오래 계속되어 무려 17년 동안이나 이해 당사자간에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정부(문화청)는 공정한 입장에서 양측의 이해와 합의를 유도해 왔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사적복제의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시급히 동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12) 현재 사적복제 대상품목으로 녹음기, 녹화기 등 5개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복보상의 모순

[각국의 대상품목의 수]

○1개 품목중에서 디지털형으로만 추진하고 있는 국가: 미국, 일본

○1개 품목만 시행중인 국가: 네덜란드, 스웨덴, 호주 등 9개국

○2개 품목 이상 시행중인 국가: 독일 등 6개국

(13) 동제도의 도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보상금액의 규모와 분배, 사용처 등에 큰 문제

실제 지난 '92년에 동제도 도입을 제안하면서 그 요율을 당초 매출액의 5%를 요구하였다가 그 문제점을 지적하자 그 자리에서 3%로 수정하고 또다시 1%로 수정한 사례만 보아도 보상금 산정의 일정한 기준이 없고 편의주의식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다.(전자업계의 순이익율은 매출액의 0.30%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보상금의 사용처도 당초에는 전체의 70%를 문예진흥기금에 출연하고 나머지 30%는 저작권재산권자에게 지급토록 추진중이라고 발표하였는데 그 경우 이것은 보상금이 아니고 문예진흥기금의 출연금이라고 의의를 제기하자 이번에는 이를 시행령으로 규정토록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14) 사적복제 보상금이 향후 국내 저작권재산권자보다도 외국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클 것으로 예상

실제 우리나라에서 사적복제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상당부분이 국내 저작물보다도 외국의 저작물이 많다고 보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그들은 필연적으로 그 보상금을 요구하게 되고 그 상당액이 외국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겠다.

이렇게 되면 동제도 도입은 국내 제조업체와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어 실제 그 이용은 국내 저작권재산권자에게 기여하는 제도로 운영될 소지도 있음을 간파해서는 안된다.

(15) 동제도가 도입의 진정한 목적이 사적복제로 인해 저작권재산권자들의 피해보상성격이라면 기술적으로 사적복제방지 기술개발의 촉진이 바람직

사적복제 방지(차단) 기술은 현재 국내외에서 다각도로 연구 개

발중이고 이미 우리나라도 '91년부터 녹화시 복제 불가장치를 이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나 저작권재산권자들이 이러한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자금 등을 지원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사적복제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기간을 대폭 앞당길 수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산업계와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는 동제도를 도입하지 않고도 조기에 사적복제를 제재할 수 있는 것이다.

(16) 복제기기 제조업체는 사적복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직접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받기도 전에 미리 제조업체가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또 그것을 제때에 내지 못할 경우 그 제조업체를 불법 복제자와 동일하게 3년 징역의 체형인, 3,0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코자 하는 것도 과연 제조업체가 저작권재산권자들을 위해 미리 대신 보상금을 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최악의 불법복제자와 동일하게 체형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17) 우리 복제기기 업계로서는 저작권재산권의 가치제고가 우리업계의 발전은 물론 국민문화 예술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저작권재산권의 가치가 제고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법복제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중요하다고 보고 저작권재산권자들도 이에 대한 노력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할 시기에 그것은 제쳐놓고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의 도입만 추진하게 되면 근본적인 불법복제 규제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